



제417회국회(임사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명확화 〉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54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명확화(안 제21조제4호)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7. 3.

다. 회 부 일 : 2024. 7.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중 하나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 요구를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등’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이 떨어지고 심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Ⅲ. 검토의견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명확화(안 제21조제4호)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직무 중에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 명확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1) 각 호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 그 대상을 한정하려는 것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 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u>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u> 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 9. (생략)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u> 」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u>청소년에게 유해한</u> ----- 5. ~ 9.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1조는 각 호에서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정하고 있고, 그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법 시행령 제8조제1항²⁾에 따라 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②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및 ③“등”이 해당됨.

- 법 제4호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이고,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³⁾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의 대상이 됨.

○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②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③“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재량을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방심위의 심의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등”을 포함하고 있어, 명확성이 떨어지고 심의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서, 심의대상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 심의대상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로 규정할 경우, 그 외 사회질서 위반, 차별·혐오, 역사왜곡 등 온라인 상 유해정보⁴⁾에 대한 방심위 심의가 불가능하게 되고,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정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한 심의제도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입장임.

- 방통위가 제시한 ③“등”에 해당하여 시정요구 대상이 된 정보는 다음과 같음.

구분	대상정보	적용규정	사례
폭력·잔혹·혐오 정보	과도한 신체 손상이나 고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등 잔혹감·혐오감을 주는 정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2호 라목, 마목, 사목	○ 신체가 훼손된 시신 사진이 게시된 정보('24. 6. 13. / 접속차단) ○ 신체가 훼손된 시신 사진이 게시된 정보('23. 1. 12. / 해당 정보의 삭제)
차별·비하 정보	합리적 이유없이 지역, 인종 등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비하하는 내용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3호 라목, 바목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차별·비하하는 내용의 정보('24. 3. 28. / 해당 정보의 삭제) ○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정보('23. 6. 22. / 접속차단)
사회 혼란	코로나19 등 사	「정보통신에 관한	○ 코로나19 확산 당시 허위

4) 방심위는 그간 방통위법시행령 제8조제1항("등" 규정) → '정보통신심의규정'의 체계에 따라 코로나19·천안함 피격사건·5.18 역사왜곡 및 유공자 차별·비하 관련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심의규정' 제8조제3호카목(사회적 혼란 야기 우려), 제6조제5호(역사왜곡), 제8조제3호카목(차별·편견 조장)을 근거로 심의한 사례가 있음

란 야 기 정보	회적 재난 상황 에서 사회혼란을 현저히 야기하는 내용의 정보	심의규정」 제8 조제3호 카목	사실 유포 등 사회혼란 야기 정보 ('20. 1. 30. / 해당 정보의 삭제) ○ 코로나19 확산 당시 허 위사실 유포 등 사회혼 란 야기 정보 ('20. 2. 24. / 해당 정보의 삭제)
사생활 침 해 정보	신고인의 신상정 보를 게시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정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 조제4호 가목	○ 개인 휴대전화번호 등을 노출하는 정보('24. 2. 1. / 접속차단)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 노출하는 정보 ('23. 11. 22. / 해당 정보 의 삭제)
초 상 권 침해 정보	신고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조롱· 비방하는 정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 조제4호 나목	○ 어린이의 초상권을 영리 목적 사용하는 정보('23. 11. 22 / 해당 정보의 삭제) ○ 초상을 무단으로 도용하 여 조롱·비방하는 정보 ('23. 9. 6. / 접속차단)

- 방심위 역시 개정시 성인에게도 유해한 폭력·잔혹 정보, 차별·혐오 정보, 사회혼란 야기정보 등의 확대·재생산이 우려되고, 인터넷 영향력, 신기술 등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문제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제시하였음.
- 종합해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심위의 심의대상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제1항제9호로 ‘그 밖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에 따른 불법정보의 범위에 문제가 되는 온라인 상 유해 정보가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점과 함께 그 외 사회질서 위반, 차별·혐오, 역사왜곡 등 온라인 상 유해정보에 대한 방심위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방통위의 신중 검토 입장 및 인터넷 영향력, 신기술 등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문제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현행 유지 필요하다는 방심위의 수용 불가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226